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운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·홍보와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면서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(안 제5조)
-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(안 제6조~안 제7조)
- 응급의료 지원(안 제8조)
- 홍보 및 포상(안 제9조~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통합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10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내용은
 -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- 안 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
 - 안 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에 대하여
 - 안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에 대하여
 - 안 7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하여

-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및 장려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 -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 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·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급상황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